

#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21. 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 〈 목 차 〉

### I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부패와 코로나19 ..... 1](#)
- [미국, 허벌라이프 중국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 종결을 위해 벌금 1억2,310만달러\(약 1,357억원\) 납부 예정이라고 밝혀 ..... 5](#)
- [국제육상경기연맹 전 회장 라민 디악 부패 혐의로 수감 ..... 7](#)
- [미국과 브라질, 투명성 증진 및 부패 근절을 위한 협약 개정 .... 9](#)
- [부패 척결에 있어서의 기술의 역할 ..... 10](#)
- [국방수권법 거부권 무효화로 자금세탁 방지 규정 개정 초석 마련 ... 13](#)
- [2020년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지표 ..... 17](#)

### II 국제회의 동향

- [2020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 19](#)
- [2020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및 장관회의 ..... 20](#)
- [제3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 22](#)
- [2020년 제2차 OECD 청렴작업반 ..... 24](#)
-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 25](#)

### III 옴부즈만 소식

-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옴부즈만, 세이프워크에 대한 조사 ..... 26](#)
- [유럽: 팬데믹으로 인한 집시와 유랑민의 빈곤과 차별 심화 ... 28](#)
- [베니스 위원회, 폴란드 옴부즈만의 '기능 마비'에 대한 우려 표명 ... 31](#)
- [유럽 옴부즈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공조달 절차 개선 권고 ... 33](#)
- [캐나다: 옴부즈만, 팬데믹 중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스템 강화 촉구 ... 36](#)
- [국제: 국제연합\(UN\)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구의 중요성 인정 ... 38](#)

# 1 부패 관련 해외 언론 보도

## 부패와 코로나19 (IMF Blog, 2020.7.28)

IMF는 코로나19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그로 인한 재정적 지출 증가로 부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지금 정부 주도의 개혁과 국제 협력,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적 이익을 위해 공직을 남용하는 부정부패는 단순히 재정의 낭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부패는 사회 계약을 파괴하고 모든 국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경제를 성장시킬 정부의 역량을 잠먹는다. 이번 코로나 위기 이전에도 부패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는 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 가지 이유로 강력한 거버넌스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 첫째, 세계 각국 정부들이 팬데믹과 맞서 싸우면서 국민과 기업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 확대는 물론 중요하지만 그로 인해 부패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도 사실이다.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적·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적시에 투명한 보고, 사후 감사 및 책임성 확보 절차, 그리고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필요로 한다. “경제에 있어 각국 정부가 맡은 역할이 커지면서 부패 발생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둘째, 공공재정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은 탈세 및 공공지출 관련 부패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 낭비 및 손실을 방지해야 한다.
- 셋째, 위기는 정부와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시험하며, 의료 서비스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윤리적 행동의 중요성은 더 커진다. 부패가 눈에 띄게 나타나면 국가가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해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경제 타격이 심화되며 정치적·사회적 화합을 위협하게 된다.

- 이번 위기 상황 동안 IMF는 거버넌스와 반부패 과제에 특히 더 집중했다. 각국 정부에 대한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다. 필요한 곳에 지출을 하되, 그 과정에서 책임성이 보장되어야만 하므로 영수증을 잘 챙겨두라는 것이다.
- IMF는 용자 업무에 있어서 긴급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빠른 지출을 실행해 왔다. 이와 동시에 각국의 팬데믹 대응을 위한 긴급 용자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관련 지출을 추적할 수 있는 강화된 거버넌스 정책을 추진해 왔다.
- 용자를 받은 국가들은 ① 위기 관련 지출의 사후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할 것 ② 공공계약을 수주한 회사와 그 실질소유주를 포함하여 위기 관련 공공조달 계약 내용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IMF는 긴급 재원이 IMF의 안전장치 평가 정책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 위기 이후를 대비하는 장기적 개혁

-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에 대한 거버넌스 안전장치는 회원국들의 건전한 거버넌스와 부패 대응 향상을 위한 IMF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이다.
- IMF는 지난 수년 간 거버넌스 및 부패 근절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2018년에는 각국 정부와 IMF의 협업을 더 투명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한 개선된 프레임워크를 채택했다. 이를 근거로 하여 강력한 거버넌스가 더 큰 중요성을 가지는 코로나19 정책 및 용자 대응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IMF는 최근 수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임직원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및 분석 결과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 ▲ IMF는 각국 거버넌스 문제에 대하여 더 솔직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 결과 각국 경제 건전성 및 IMF의 용자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평가에서 거버넌스 및 부패 문제가 포함되는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과 비교했을 때, IMF가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18개월 이후 임직원 보고서에서 거버넌스 관련 언급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이전 10년 간의 평균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 IMF가 각국 정부와 거버넌스에 대하여 논의하는 빈도수가 4배 이상 증가했다. 일례로, 최근 IMF 감시 업무의 초점은 라이베리아의 중앙은행 거버넌스와 운영, 몰도바의 금융부문 감독, 멕시코의 반부패 프레임워크에 맞춰져 있다. 또한 IMF 임직원은 더 구체적인 거버넌스와 반부패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 ▲ IMF에서 지원하는 용자 프로그램에는 거버넌스 및 반부패 개혁과 관련된 특정 조건제한이 포함되는데, 이는 거버넌스 개선이 많은 IMF 프로그램의 핵심 목표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 ▲ IMF는 각국의 거버넌스와 반부패 노력 개선을 돕기 위한 기술 지원과 교육을 강화했다. IMF의 목적은 각국이 조세행정이나 공공지출 관리 감독, 회계 투명성, 금융부문 감독, 반부패 제도, 고위공직자의 자산 신고 등의 영역에서 거버넌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의 일환으로 십 여개국에서 법적 기틀에 기반한 거버넌스 취약점의 상세 분석 및 최우선순위 솔루션 제안 등으로 이루어진 거버넌스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다.
- ▲ 또한 지금까지 10대 경제 강국(오스트리아, 캐나다, 체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위스, 영국, 미국)이 초국가적 부패 가능성을 제한하기 위한 각국 국내 프레임워크 평가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IMF에서 시행하는 이러한 평가의 목표는 ① 외국 공직자에 대한 뇌물공여를 법률로써 금지하고 그러한 행위의 기소 ② 외국 공직자들이 부패수익을 자국 금융시스템 및 내수 경제 시스템 하에 은폐하는 행위 방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국가 개입의 정도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IMF는 회원국들이 이러한 내용을 각국의 연간 경제 건전성 검토에 포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 부패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개혁과 국제 협력, 시민사회 및 민간부문과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수개월, 수년에 걸쳐 정치적 의지와 개혁 조치를 부지런히 실행에 옮겨야 한다.
- 팬데믹의 파괴적인 영향력과 그로 인해 대중과 경제에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여 향후 수년 간 IMF는 거버넌스에 더 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국가는 모든 것이 좋은 상황에서도 귀중한 자원을 낭비할 수 없는데, 이러한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반부패 개혁을 실행해야만 하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 원문기사 : Corruption and COVID-19 (2020.7.28., IMF Blog)

**미국, 허벌라이프 중국에서 발생한 뇌물 사건 종결을 위해 벌금 1억2,310만달러(약 1,357억원) 납부 예정이라고 밝혀** (Reuters, 2020.8.28)

*허벌라이프는 중국 사업 확장을 위해 중국 내 판매허가 취득, 관리감독 완화 등을 대가로 중국 공직자들에게 금품 및 식사 등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합의금 약 1,357억원을 납부할 예정이다.*

- 중국에서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중국 정부기관 공직자와 언론기관에 뇌물을 제공한 형사 및 민사 혐의를 종결하기 위하여 허벌라이프사가 1억2천3백10만(약 1,357억원) 달러를 납부할 예정이라고 미국 법무부가 밝혔다.
- 다단계 마케팅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허벌라이프는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미국의 반뇌물법인 해외부패방지법의 장부와 기록에 관한 조항 위반을 모의한 혐의를 인정하며 3년의 기소유예에 합의했다.
- 당국에 따르면 허벌라이프는 2007년~2016년 사이에 직접판매허가 취득, 정부 관리감독 완화, 국영언론의 부정적 보도 회피 등을 목적으로 중국 공직자들에게 현금과 향응, 식사 등을 제공했다.
- 규제 당국의 기록에 따르면 허벌라이프의 2016년 순매출액 44억9천만 달러(약 4조 9,500억원)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19%였는데, 이는 2006년 7%에 비하여 크게 향상된 비중이었다.
- 오드리 스트라우스(Audrey Strauss) 뉴욕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성명서를 통하여 허벌라이프가 중국 공직자들에게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뇌물제공’을 하는 동시에 이를 적법한 영업비용으로 보이도록 하게 위하여 기록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 허벌라이프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민사 사건 종결을 위하여 5천5백 74만 달러(약 614억원)의 벌금과 더불어 6천7백31만 달러(약 742억원)의 부당이익 환수금을 납부하게 된다.

-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허벌라이프는 준법절차 개선을 요구하는 해당 사건의 종결을 위한 합의금을 마련해 두었다고 밝혔다.
- 미국 검찰은 지난해 11월 허벌라이프 중국지사 대표인 양리양리 (Yanliang Li)와 대외업무 부서장인 홍웨이양(Hongwei Yang)를 관련된 부패 혐의로 기소했다. 이 두 인물은 중국 국민으로, 구속되지 않은 상태이다.
- 허벌라이프는 6주 전 중국 사업 현황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는 증권거래위원회의 혐의 종결을 위하여 2천만 달러(약 220억원)를 지급하는 데도 합의했다.

※ 원문기사 : U.S. says Herbalife to pay \$123.1 million to resolve China bribery case (2020.8.28, REUTERS)

**국제육상경기연맹 전 회장 라민 디악 부패 혐의로 수감** (Sky Sports, 2020.9.16)

국제육상경기연맹 라민 디악 전 회장은 도핑이 의심되는 러시아 선수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폐한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 50만 유로 (약 6억 6,800만원)가 부과받았다.

- 국제육상경기연맹(IAAF)의 라민 디악(Lamine Diack) 전 회장이 러시아 선수의 도핑 스캔들과 관련된 부패 혐의로 프랑스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 87세의 디악은 도핑이 의심되는 선수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검사 결과를 은폐함으로써 이들이 2012년 런던 올림픽 등 여러 경기에 계속해서 출전하도록 한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았다.
- 또한 법원은 디악이 2012년 세네갈 대선에서 마키 살(Macky Sall)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자금지원을 위하여 도핑검사 절차 진행을 늦추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 검찰에 따르면 디악은 도핑 부정행위 의심을 받는 선수들에게 총 3백45만 유로 (약 46억원)에 달하는 뇌물을 요구했다. 재판장은 디악의 이러한 행위가 ‘육상의 가치 그리고 도핑 근절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말했다.
- 법원은 디악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50만 유로 (약 6억 6,800만원)라는 법정 최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국제육상경기연맹의 회장을 역임한 디악은 한때 육상계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 중 하나였다.
- 국제육상경기연맹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나긴 5년의 시간 동안 세심하게 일하며 이번 사안 조사에 힘써주신 프랑스 검찰과 법원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다.

- 또한, ‘이러한 일이 우리 종목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만 이러한 범죄에 연루되고 기소된 자들에 대해 강력하고 분명한 결정이 내려진 데 감사의 뜻을 전한다. 우리는 2016년 총회에서 승인한 개혁조치에 따라 개인이 저지르는 이 같은 행위가 우리 종목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린다. 파리 형사법원에서 횡령 자금 및 범죄행위와 그에 대한 언론보도의 직접적 결과로 발생한 이미지 손실에 대해 총 1천6백만 유로(약 213억 8,9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법정에서 이미 인정된 바와 같이, 이러한 손실로 인하여 세계육상연맹의 재정과 이미지, 명성에 깊고도 오래가는 부정적 영향이 남게 되었다. 우리는 뇌물로 공여된 돈을 환수하고 이를 전 세계 육상인들의 발전을 위한 사용에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원문기사 : Lamine Diack: Former head of IAAF jailed for corruption (2020.9.16, Sky Sports)

**미국과 브라질, 투명성 증진 및 부패 근절을 위한 협약 개정**

(Global Trade Magazine, 2020.10.27)

*미국과 브라질은 뇌물예 대한 세금공제 금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등 부패예방을 위한 조항이 포함된 새로운 통상·경제협력협약을 체결하였다.*

- 미국과 브라질은 기존의 2011 통상·경제협력협약(ATEC)의 개정을 위한 새로운 반부패 및 통상 분야 촉진 협약을 체결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약에는 관세 절차, 투명한 규제 관행, 그리고 반부패 정책 규정을 담은 세 개의 새로운 부록이 추가되었다.
- 부록 I '관세 행정과 통상 증진'에는 무역 규제 집행을 포함하여 미국과 브라질 간의 관세 협력 증진을 위한 조항이 담겨 있다. 또한 관세 정보의 온라인 공시, 국제기준에 준하는 전자문서 접수, 수출입항마다 일관된 관세 처리를 보장하는 매커니즘, 수입·수출·환승 문서의 전자제출을 위한 단일창구 개설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부록II '건전한 규제 관행'에는 브라질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조항이 담겨 있다. 여기에는 규제 초안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데 동의함으로써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 규제 부담 절감을 위하여 당국이 규제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부록III '반부패'에는 뇌물예 대한 세금공제 금지 조항, 회계 및 장부 관리 규정,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마련에 대한 조항 등 부패 예방 및 근절을 위해 기울여야 하는 노력들이 담겨 있다.

※ 원문기사 : U.S. and Brazil Update Agreement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Combat Corruption (2020.10.27., Global Trade Magazine)

**부패 척결에 있어서의 기술의 역할** (BUSINESSWORLD, 2020.12.11)  
 기술을 활용한 부패문제 해결은 행정 절차를 자동화 하고, 국민들이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으로 공공서비스 정보를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이러한 기술들을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을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단순히 기술의 존재만으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인도 농촌지방 주민 대다수가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 불균형은 새로운 부패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기술이 원래 목적으로 하는 생산성을 발휘할 수 없게 만든다.

- 정책적 개입 또는 사회 운동을 통한 부패 근절 노력이 수년간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일상생활 구석구석에 존재하고 있다. 세간의 이목을 끄는 부패 사건이 이따금씩 대대적으로 보도되기는 하지만 어디에나 존재하는 사소한 부패는 이제 일상적인 상황으로 인식되어 인도에서는 뉴스거리가 되지 못한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최근 연구 결과, 인도 국민의 뇌물수수 경험율이 39%에 달하며 개인적 인맥을 동원하여 일을 처리하는 국민의 비율이 4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가 이루어진 아시아 17개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사소한 부패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인도의 극빈층이 가장 의존하는 기본적 공공 서비스의 전달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상적인 부패 관행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개발 프로그램이 제대로 시행될 수 없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불러오며 거버넌스와 민주주의까지도 약화될 수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부패 문제 해결에 대한 새로운 희망도 높아지고 있다.
- 대중 사이에 정보 부족이 혁신의 원천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정보 통신 접속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수혜 과정에서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부패는 그러한 제도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기술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 기술을 통하여 사업체와 사용자 모두에게 더 많은 정보 이용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장 내 거래 비용이 상당히 절감되었고, 결과적으로 자기규제 메커니즘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모델이 공공서비스의 경우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 국민들이 절차와 권리에 대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가지면 정부에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커지게 된다.

-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는 많이 보급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농촌지역까지 보급되어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공공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터치 한 번으로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서비스와 개발계획을 더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면 대중이 정부당국에 관련 질문을 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청렴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강화를 위하여 제도적으로 기술 혁신에 투자할 수도 있다. 데이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와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 기술을 통하여 부정부패를 저감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행정 절차를 자동화하는 것이다. 복잡하고 느린 행정절차 가운데 뇌물을 요구하고 요구받을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 절차를 자동화하여 개인과 공무원 사이에 발생하는 물리적 접촉의 폭을 좁힘으로써 뇌물을 주고받을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인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접혜택전달’(Direct Benefit Transfer, DBT) 계획은 절차 자동화가 어떻게 불필요한 형식을 제거하고 부패를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인도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국민 계좌갖기(Jan Dhan Yojana) 정책의 계좌에 지원금을 현금으로 직접 이체함으로써 개발 정책에서 중개인의 역할을 없애고 더 나아가 부패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축소됐다. 351개의 ‘직접혜택전달’ 기반 정책을 통하여 1조 7천억 루피(약 25조 7천억원)가 중개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직접혜택전달’ 정책은 전국민계좌갖기(ja Dhan)-전자주민등록(Aadhaar)-모바일(Moble)을 통합하는 “JAM 삼위일체”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국민 각각에 특정 디지털 ID를 부여하는 전자주민등록 정책을 통하여 수혜자 확인을 간소화하고 허위부정수급자를 목록에서 제거함으로써 부패와 부정수급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었다.

- 디지털화로 인하여 많은 개발 프로그램 실행과 공공서비스 제공에 이미 큰 변화가 나타났으며, 사소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다음 단계는 디지털 툴 사용을 개선하는 것이다.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 이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를 더욱 확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을 사용할 지식이 없으면 기술이 단순히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대중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데, 인도의 농촌지역 주민 다수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실제로 이러한 정보 불균형이 부패의 새로운 가능성을 낳을 수 있으며, 기술이 그 원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 원문기사: Role Of Technology In Tackling Corruption (2020.12.11, BUSINESSWORLD)

**국방수권법 거부권 무효화로 자금세탁 방지 규정 개정 초석 마련**

(The WALL STREET JOURNAL, 2021.1.1)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익명의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다수 미국 기업들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기업 소유주 공개를 의무화하는 미국 국방수권법이 승인되었다.*

지지자들은 미 국방수권법의 일환으로 기업 소유주 공개가 의무화되면 불법 금융을 위하여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관행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 미국 국방수권법이 승인되면서 기업 소유구조 투명성 강화 조치들을 포함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에 대한 자금지원 근절을 목표로 입안된 새로운 규정들이 발효될 예정이다. 이로써 반부패 지지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됐다.
- 2021년 국방수권법 조항에 따라 다수의 미국 기업들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하여 익명의 유령회사를 이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실제 소유주를 등록해야 한다. 또한 이 법을 통하여 자금세탁 금지 법률의 위반 가능성 신고 장려를 목표로 하는 새로운 공익신고 프로그램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 지난 금요일 상원의 투표 결과 찬성 81대 반대 13표로 2021 회계연도에 국방 작전과 국가안보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을 결정하는 법안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무효화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자금세탁 방지 조치와는 무관했다. 미 하원 역시 찬성 322표대 반대 87표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중지시킨 바 있다.
- 워싱턴에 위치한 ‘금융 책임성과 기업 투명성 연합’의 상임정책고문 클라크 개스코인(Clark Gascoigne)은 ‘실제 수익소유자가 알려지지 않고 불분명한 유령회사들은 미국 자금세탁 방지 안전장치의 가장 큰 약점이다’라고 말했다. 금융 책임성과 기업 투명성 연합은 기업 소유주 공개를 추진해 온 단체이다.

- 수많은 기업들에게 현재로서는 영업 이익의 실제 수혜자를 확인해야 할 연방 차원의 의무가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여러 주 규정은 기업 소유주들이 유령회사나 소유주를 대신하여 등록된 대리인을 통하여 자신의 신원을 숨기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기업 소유주 공개 의무화를 통하여 테러 단체나 마약 카르텔, 기타 위법 행위자들이 유령회사를 이용하여 위법행위를 위한 자금을 융통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스코인 고문은 법문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는 우리의 금융시스템을 악용할 여지를 남겨두지 않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진일보이다’라고 말했다.
- 미국 재무부는 이제 1년 안에 기업들이 어떻게 해당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사항을 발표해야 한다. 규정이 발효되면 미국에서 설립되는 수많은 기업들은 실질소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주소, 운전 면허증 번호 혹은 여권번호 등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 번호를 공개해야 한다. 기존 기업들은 규정 발효 후 최대 2년 내에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이러한 정보는 재무부의 금융범죄 단속 네트워크 등록부에 등재되며 대중에게 공개된다. 연방 법집행기관 역시 해당 데이터에 접속이 가능하며, 금융기관도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다.
- 상장기업 및 연방정부의 규제를 받는 기타 다수 기업에게는 이러한 보고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20명 이상의 상근 직원을 보유하고 연간 매출액이 5백만 달러(약 55억원) 이상이며 실제 영업장을 가진 기업들 역시 보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 해당 법률에 반대했던 전국자영업자연합은 새로운 규정으로 인하여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들이 감당해야 할 서류작업이 늘어나고 불이행으로 처벌 받을 위험성을 부당하게 높아진다고 주장한다.
- 워싱턴에 위치한 전국자영업자연합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에서 해당

규정을 지키기 위하여 30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케빈 쿨만 (Kevin Kuhlman) 전국자영업자연합 연방정부 담당 부회장은 ‘그러나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미 상당히 부담스러운 서류작업에 서류 한 장 정도가 늘어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찾아보기기 힘들다’라고 말한다.

- 또한 쿨만 부회장은 더 많은 기관에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기업의 프라이버시 관련 위험이 증가하게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쿨만 부회장은 최근 몇몇 연방기관을 표적으로 한 해킹 시도로 인하여 재무부의 의심활동 보고서와 이메일 계정이 유출된 사건을 언급했다.
- 재무부 대변인은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다.
- 금융기관들은 금융비밀법 준수를 위하여 고객이 신규 계좌를 개설할 때 이러한 종류의 정보를 이미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새로운 규정을 통하여 정보공개 규정이 더 느슨한 국가에 해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국적 유명회사를 이용하는 행위의 단속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정을 통하여 집행기관들의 자금세탁 수사 국제공조가 간소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 이 법안을 지지했던 산업단체인 은행정책연구소의 그레그 배어(Greg Baer) 소장은 ‘놀랍게도, 자금세탁 방지의 여러 다른 부분에서는 앞서있는 미국이 유독 이 분야에서만큼은 몹시 뒤처져 있다. 이 때문에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이 안전지대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또한 이번 정책을 통하여 은행비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용한 정보를 자발적으로 재무부나 법무부에 제공하는 신고자에게 금전적 보상을 제공하는 정책이 신설된다. 신고자가 제공한 정보를 통하여 단속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부과되는 벌금액이 1백만 달러(약 11억원)를 초과할 경우에 보상금이 지급된다.
- 공익신고자 보상 확대 정책의 지지자들은 이전 정책에서 신고에 대한

보상이 간과된 측면이 있으며 미흡하다고 지적해왔는데, 새로운 규정에서는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이 확대되었다. 새로운 정책을 통하여 기존의 공익신고자 보상 정책 미비로 인하여 자금세탁 규정 위반 조사 권한이 제한되어 있는 증권거래위원회나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겪었던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지자들이 말했다.

※ 원문기사 : Defense-Bill Override Paves Way for Overhaul of Anti-Money-Laundering Rule (2021.1.1, The WALL STREET JOURNAL)

**2020년 해외부패방지법 집행 지표** (The FCPA Blog, 2021.1.4)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개 기업에 대해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약 64억 달러(약 7조 464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2020년 12개 기업에 대하여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집행을 실시하고 사상 최고 금액인 총 64억 달러(약 7조 464억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2019년에는 14개 기업에 대하여 해외부패방지법이 위반이 집행되고 사건 종결을 위하여 당시로서는 사상 최대금액이었던 29억 달러(약 3조 1,929억원)의 벌금이 부과된 바 있다.
- 2020년 10월에 골드만삭스가 납부한 33억 달러(3조 6,333억 원)가 가장 큰 금액의 벌금이었으며, 카디날 헬스가 중국에서 저지른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사건 종결을 위하여 납부한 880만 달러(약 97억원)가 가장 적은 금액이었다.
- 골드만삭스는 KBR을 제치고 해외부패방지법 벌금액 상위 10대 기업 목록에 1위로 진입하면서 해당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미국 기업이 되었다.
- 5건의 해외부패방지법 사건 종결 관련 금액만 하더라도 이미 10억 달러(약 1조 1,000억원) 이상에 달하는데, 상위 10위 사건의 벌금액은 최소 5억 8천5백만 달러(약 6,44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부패방지법 사건 종결을 위한 벌금액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산출했다.
-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하여 8개 기업이 감액 처분을 받았다. 영국에 본사를 둔 거대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2020년 8월에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기록을 통하여 법무부가 자사에 ‘집행 조치를 개시할 의도가 없으며 조사를 종결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한 몇몇 제약 회사들은 이라크에서의 부당행위 가능성에 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조사와 관련하여 2018년 7월 법무부로부터 ‘질의’를 받았다.

- 6명의 개인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다른 6명은 기소되었으며 7명은 유죄판결을 받았다.
- 기소된 6명 중 2명은 여성, 4명은 남성으로, 이들의 평균 연령은 56.3세였다.
- 이들 중에는 골드만삭스 간부였던 아산테 베르코(Asante Berko)가 포함되어 있다. 해외부패방지법 반뇌물 조항을 위반하고 위반을 방조 및 사주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는 베르코를 기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베르코는 터키 에너지 기업이 가나 발전소 건설 계약을 수주하도록 중개인을 통하여 뇌물 수수를 알선하고 공여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 프랑스에 본사를 둔 알스톰(Alstom SA)사의 상무였던 로렌스 호스킨스(Lawrence Hoskins)는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모의에 관한 공소사실 한 건과 중대한 해외부패방지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 여섯 건에 대하여 2019년 11월 배심원단의 유죄 결정을 받았으나 최근 판사로부터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호스킨스는 자금세탁 모의에 대한 공소사실 및 실질적 자금세탁 공소사실 세 건에 대하여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 해외부패방지법으로 기소된 피고 2인에 대해서는 재심 결정이 내려졌다.

※ 원문기사 : The 2020 FCPA Enforcement Index (2021.1.4., The FCPA Blog)

## 2 국제회의 동향

### 1 2020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 □ 회의 개요

- 일시 : '20. 9. 7.(월) - 10.(목) 19:30-23:30 (리야드 현지 시간 13:30-17:30)
- 장소 :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UAE 등 참관국 대표, OECD, UNODC, Interpol, 등 국제기구 대표

#### □ 주요 내용

##### ▶ 장관급 선언문과 리야드 이니셔티브

-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장관급 선언문과 리야드 이니셔티브(법집행 국제협력)에 대한 합의에 도달
  - 선언문 주요 내용 : G20 반부패실무그룹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의제(자산 회복, 실소유주 투명성, 은닉처 제공 거부, 부패의 범죄화, 공공분야 청렴성, 민간분야 및 NGO 청렴성 등)에 대한 이행 약속
  - 리야드 이니셔티브 : 국가간 반부패 관련 사범 공조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협력 이니셔티브로서 선언문 부속서로 채택 예정

##### ▶ 이행보고서

- 한국을 비롯한 7개 국가가 반부패 행동계획에 기반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고, 미제출국가는 9.15.(화)까지 제출해 줄 것이 요청됨

##### ▶ COVID19 대응 자료

- 의장단과 UNODC는 COVID19 대응과 관련한 반부패 우수사례 모음집 초안을 작성중이며 10월초에 초안을 회람 예정

## 2 2020년 제3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및 장관회의

### □ 회의 개요

- 일시 : '20. 10. 19.(월), 22.(목) 19:30-23:30 (리야드 현지 시간 13:30-17:30)
- 장소 : Webex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참석자 : G20 회원국 대표, UAE, 르완다 등 참관국 대표, OECD, UNODC, Interpol 등 국제기구 대표 ※ 위원회(김의환 상임위원, 국제교류 사무관)

### □ 주요 내용

#### ▶ G20 반부패 장관급 선언문 및 부속서 승인

- '19.12월 - '20.10간 논의된 장관급 선언문과 아래 부속서에 대해 최종 합의
  - 코로나19 관련 부패에 대한 행동 강령
  - 반부패 법집행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리야드 이니셔티브
  - 국가 반부패 정책 개발 및 이행을 위한 G20 고위급 원칙
  - 정보통신기술 활용을 통한 공공분야 청렴증진을 위한 G20 고위급 원칙
  - 민영화 및 민관협력 청렴 증진을 위한 G20 고위급 원칙
  - 2020 반부패 이행보고서
  - 경제범죄, 범죄자 및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G20 행동 강령
  - 코로나19 관련 부패 척결 우수사례 모음집
  - 반부패 이행보고서에 대한 국가별 보고서
  - 코로나19 관련 부패 척결 우수사례 국가별 보고서

#### ▶ 부패 및 경제범죄, 범죄자 및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

-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부패 및 경제범죄, 범죄자 및 자산회복 관련 국제협력 행동 강령에 합의함

- 상기 문서는 영국과 인도가 주도하여 개요를 작성, G20 회원국과 국제기구의 논의 후 최종 승인됨
- 주요 내용 : G20 회원국간의 부패 관련 경제범죄(자산회복, 경제 범죄 정보 및 범죄자 정보 등) 정보 공유 및 국제 협력

▶ **L20(Labour 20)과의 협력**

- 노동계를 대표하는 L20이 처음으로 반부패실무그룹에 참석, L20의 논의 개요와 노동계 차원의 반부패 기여방안에 대한 내용을 브리핑

▶ **학계와의 협력**

- Sussex 대학의 리즈 데이빗-바렛(Liz David-Barret) 교수가 학계 대표로 실무그룹회의에 참석, 10.12.(월)에 개최된 G20 반부패실무그룹과 학계의 미래 협력방안 라운드 테이블 결과를 보고함
- 반부패 이행에 대한 국가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부패 법집행기관간 국제협력이 중요함
- 코로나19 관련 부패에 가장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은 공공 조달관련 부패를 적극 관리하는 것임
- 반부패 측정 방법을 효율적으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3 제31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ACTWG) 회의

#### □ 회의 개요

- 일시 : '20. 10. 23.(금) 10:00-14:00
- 장소 : 고투미팅(Goto Meeting)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참석자 : APEC 회원국(20개국), UNODC, TI 관계자 등 30여명

#### □ 주요 내용

##### ▶ APEC 사무국 보고

##### ○ 프로젝트 진행경과 보고

- '반부패에 있어 성주류화 및 여성 권한강화 심포지엄'출판('20. 12. 30. 완료)
- 사법 공조를 통한 불법자금 피난처의 제거(2021년으로 연기)
- 공공·민간 소통 - 윤리경영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 전략(2021년으로 연기)
- 수익 소유자 은닉의 근절 위한 역량 강화 워크숍('21. 3. 31 예정)

##### ▶ 차기 개최국(뉴질랜드) 보고

##### ○ 2021년 APEC 아젠다(잠정)

- 회복을 위한 경제무역 정책(Economic and Trade Policies to Strengthen Recovery)
- 포용 및 지속성 증진(Increasing inclusion and sustainability)
- 기술혁신 추구 및 디지털로 활성화되는 회복(Pursuing innovation and digitally enabled recovery)

##### ○ ACTWG 주최기관으로서의 중점 사업

-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부패를 예방하기 위한 워크숍
- '의장의 친구들(Friends of a Chair)'을 중요성과 지속성을 부여하기 위해 상임위원회로의 변화 추진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하 반부패 정책 모범사례 소개**

- 인도네시아(KPK)의 경우 코로나19 정책의 분석 및 환류, 국내 코로나19 주관 부처·감독기관·지방 정부와 긴밀한 협업, 온라인 플랫폼 (JAGA.go.id) 개통을 통한 민원제기 활성화 등의 방법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한 공적자금의 부패를 억제하고 있음
- 태국(MACC)은 회계 감사 총괄 부처가 조달 가격을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모든 정부 기관이 접근할 수 있는 ‘공공 조달 온라인 데이터 베이스’를 개통할 것을 제도 개선함
- 미국은 팬데믹 이후 독립적 감시기구인 ‘PRAC(Pandemic Response Accountability Committee)’을 설립하였고, 이들 기구가 팬데믹 시기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반부패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였으며, 현재 온라인에서 검색이 가능함

▶ **UN 총회 특별 세션에 관한 논의(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Special Session, UNGASS 2021)**

- 미국은 향후 7~8개월동안 UNGASS 선언을 위한 초안을 준비할 것이며, 반부패에 대한 공동의 가치를 찾을 것이라고 밝힘
  - 반부패의 전략들(예방, 법 집행, 국제협력, 자산회복)을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강조할 것이며, 외교적인 선언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반부패 활동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며, 이를 위한 회원국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청함

#### 4 2020년 제2차 OECD 청렴작업반

##### □ 회의 개요

- 일시 : '20. 11. 30.(월) 21:00-23:00 (프랑스 현지 시간 13:00-15:00)
- 장소 : OECD 측에서 마련한 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참석자 : OECD 공공행정위원회, 청렴작업반 회원국 및 참관국 약 80여명 참석

##### □ 주요 내용

###### ▶ 로비 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 원칙에 대한 OECD 권고문

- Mr. Julio Biaci Terracino(Acting Head, Public Sector Integrity Division, OECD)가 '로비 활동의 투명성과 청렴성 원칙에 대한 OECD 권고문 모니터링 보고서'를 소개하며 동 권고문이 2010 OECD 청렴권고문 보다 다양한 출처의 정보를 바탕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제작 되었다고 소개함
- 로비 활동에 대한 투명성과 청렴성 증진을 위하여 국가별로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나, 노력의 정도와 발전의 속도에 대한 국가별 차이가 현저하며, 또한 로비 활동의 영역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도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음. 이에 대응할 측정 척도와 기준이 다양하고 유연하게 마련하여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신뢰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 OECD 공공청렴 툴킷 베타버전

- Mr. Charles Victor (OECD Public Sector Integrity Division)은 OECD 공공 청렴 툴킷이 다양한 언어로 활용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고 하면서 온라인상의 활용방법을 소개함
-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스페인은 툴킷이 사용자 친화적이라고 언급함. 다만, 공공청렴권고안의 13개 원칙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할 여지가 있다고 함

## 5 제9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11.30(월), 오스트리아/온라인 화상회의
- 장소 : OECD 측에서 마련한 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
- 참석자 : 54개국 당사국 대표

### □ 주요 내용

- 코로나19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온라인 화상회의를 하였으며,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만을 핵심적으로 논의
- 가장 중요한 의제는, 2021-2024년 업무계획으로 동 제안은 지난 8차 총회에서 이사회가 제안한 바 있는 IACA 전략적 발전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됨
- 2021년 예산안은 참석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으나, 동 예산안 (약 4.4백만 유로)은 희망 예산안으로,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금에 따라 실제 예산액은 크게 달라질 수 있음
- 총회는 이외에도 제10차 당사국총회 의제 및 개최 결의안(오스트리아, 4/4분기 개최)을 승인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pm.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 3 옴부즈만 소식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옴부즈만, 세이프워크에 대한 조사 (IOI, 2020.8.25)**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옴부즈만은 블루마운틴시티 직장 세이프워크의 법에 부합되지 않고 비일관적인 기준을 적용한 조사로 시의회에 재정적 부담을 발생시켰다며 세이프워크의 정책과 절차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

- 뉴사우스웨일스(NSW)주 옴부즈만은 ‘블루마운틴시티 시의회 직장 세이프 워크NSW(SafeWork NSW) 조사관들의 조치에 관한 조사’에 대한 특별 보고서를 발표했다.
- 블루마운틴시티 시의회에서 2018년 제기한 민원에 따라 해당 조사가 시작되었다. 블루마운틴시티는 시 당국의 석면 관리 관행과 관련하여 2011년 직장보건안전법 하에서 다양한 준법 조치를 취할 당시 세이프 워크가 부적절한 행정 행위를 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 세이프워크는 뉴사우스웨일스주의 직장 보건·안전 규제당국으로서 직장 내 안전 보장, 산재 사망자수와 부상자수, 질병 등의 감소를 위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근로자와 고용주 그리고 지역사회는 세이프워크가 전문 지식과 증거자료, 관련 기준 등에 근거하여 내리는 결정과 조치에 따르고 있다. 이러한 결정과 조치는 직장 내 존재하는 위험 및 발생 가능한 피해의 심각성을 반영해야 한다.
- 마이클 반스(Michael Barnes) 뉴사우스웨일스주 옴부즈만은 ‘그러나 옴부즈만실 조사 결과 세이프워크 준법 고지가 법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세이프 워크 조사관들이 법에 따라 요구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없이 단순히 지시를 받아 통지서를 발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 또한 옴부즈만 조사 결과 세이프워크가 법률의 지침이나 관련 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취할 것을 시 당국에 요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워크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자세한 조사 결과와 세이프워크에 대한 다수의 권고안이 보고서에 담겨 있다.

- 마이클 반스 뉴사우스웨일스주 옴부즈만은 ‘확인된 사례에서 세이프워크가 취한 행동의 영향은 블루마운틴시의회에 상당한 재정 부담을 초래했고 그로 인하여 납세자들에게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발생시켰다. 옴부즈만은 세이프워크가 시의회에게 사과하고 그러한 행위로 야기된 부당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세이프워크의 정책과 절차, 교육 등을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말했다.
- 보고서는 세이프워크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석면으로 인한 보건·안전 위험성 관리와 관련하여 당시 블루마운틴시티 시의회에 언론과 정치적 관심이 상당히 많았다.
- 석면 등의 위험성이 지역사회 안전에 우려를 제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규제 당국의 철저하고 일관되며 균형 잡힌 대처 방식이 더욱 중요하다. 규제 당국은 적법한 법률적 권한 하에서 관련 기준과 적절한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 이번 조사의 중심 이슈는 좋은 행정 관행이다. 고용주, 근로자, 지역사회 모두는 규제당국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하며, 법 집행에 있어 확실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만 뉴사우스웨일스주 주민 모두가 옴부즈만의 감독 하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서비스와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IOI “AUSTRALIA : NSW Ombudsman tables investigation into SafeWork NSW”  
(IOI 홈페이지>News, 2020.8.25.)

**유럽: 팬데믹으로 인한 집시와 유랑민의 빈곤과 차별 심화** (IOI, 2020.9.30)

유럽연합기본권기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집시와 유랑민 다수가 주거, 고용, 보건, 교육 등 생활환경이 열악해 졌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유럽연합기본권기구(FRA)가 새롭게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유럽의 집시와 유랑민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와 유랑민 다수가 소득을 잃었고, 혼잡하고 위생 시설이 부족한 주거환경으로 건강 위험이 더욱 증가했으며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격 교육 역시 이들에게는 불가능하다. 특히 집시에 대한 차별과 반감 역시 온라인에서 증가했다. 유럽연합 기본권기구는 정책입안자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시급히 해결하고 뿌리 깊은 편견과 차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유럽연합기본권기구의 마이클 오플래허티(Michael O'Flaherty) 소장은 '코로나바이러스 자체가 사람을 차별하지는 않지만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도입된 조치들은 차별을 한다. 봉쇄조치 강화, 복지와 지원의 부족, 온라인 교육 기회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집시 및 유랑민 집단의 다수가 팬데믹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며 코로나19 팬데믹 동안과 그 이후에도 집시와 유랑민이 사회의 일부가 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 유럽연합기본권기구의 최근 보고서인 '유럽연합 내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 집시와 유랑민에 대한 영향'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어려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 ▲ 봉쇄 -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집시와 유랑민 공동체에 대한 봉쇄가 강화되었다.

- ▲ 주거 - 집사와 유랑민 대다수는 상수도 시설이 없고 많은 식구가 함께 사는 혼잡한 거주환경에 놓여 있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두기나 손 씻기가 매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집사와 유랑민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성이 더 높다.
- ▲ 고용 - 봉쇄조치로 인하여 노점상이나 불안정한 계약직 노동자의 실업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집사와 유랑민은 팬데믹 이전에 공식적 경제 활동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원금이나 복지혜택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
- ▲ 빈곤 - 실업으로 인하여 팬데믹 이전에 이미 높았던 빈곤률이 더욱 상승하고 영양실조의 위험성 역시 증가했다.
- ▲ 보건 - 일부 국가에서 집사와 유랑민의 절반만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많은 이들이 의료 혜택 이용에 있어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 ▲ 교육 -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집사와 유랑민 자녀의 대부분은 학업의 중도 이탈율이 높았다. 이들은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가 봉쇄될 때 온라인 교육에 참여할 수 없다.
- ▲ 증오 발언 - 팬데믹 중 집사와 유랑민이 바이러스 확산에 책임이 있다는 증오발언과 차별이 증가했다.
- 유럽연합기본권기구는 회원국들에게 2013년부터 유럽연합회의에서 권고해 온 통합 조치 이행을 촉구한다. 기본권기구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안점을 둔다.
- 집사와 유랑민들은 주요 빈곤 퇴치 계획이나 고용 창출 및 기타 사회적 통합 계획의 혜택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 전역에 감염자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팬데믹 기간 중 집시 공동체에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 및 교육 중개인들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

- 회원국들은 집시와 유랑민에 대한 반감과 편견을 근절해야만 한다. 이들 공동체는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가장 큰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는 위험 그 자체로 비춰지곤 한다.

## 배경

- 유럽연합기본권기구가 집시 및 유랑민에 대하여 새로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유럽의 집시와 유랑민의 4분의 1 가량이 팬데믹 이전에도 이미 난방이나 건강한 식품 등의 기본적인 생필품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또한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만연한 차별과 공격을 경험한다.
- 유럽연합은 조만간 ‘평등, 통합, 참여를 위한 EU 집시 전략 프레임워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유럽연합 내 집시와 유랑민들의 어려움 해결을 앞당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번 보고서는 2020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 15개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집시와 유랑민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출처: IOI “EUROPE : Pandemic worsens Roma and travellers poverty and discrimination” (IOI 홈페이지>News, 2020.9.30)

**베니스 위원회, 폴란드 옴부즈만의 '기능 마비' 에 대한 우려 표명** (AP, 2020.10.13)

유럽의 주요 인권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폴란드 집권 여당이 새로운 폴란드 옴부즈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정부에 비판적인 전임 위원장이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법 조항을 폐지하고자하는 헌법재판소의 제소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주요 국제 인권기구가 폴란드의 인권위원회 기구인 옴부즈만의 '기능 마비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 옴부즈만실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한 독립 기구로, 폴란드에서 민족주의 보수 정권 집권 5년 간 민주주의의 퇴보로 인하여 그 기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유럽의 주요 인권기구이자 유럽회의의 입헌 관련 사안에 대한 자문기구인 베니스 위원회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문제가 시민의 자유를 수호하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 베니스 위원회는 '옴부즈만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 및 건전한 행정에 대한 존중 등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의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 또한 '옴부즈만직의 연속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 가장 최근의 옴부즈만 위원장이었던 아담 보드나르(Adam Bodnar)의 임기가 지난 9월 만료되었지만 의회는 후임자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법에 따라 보드나르 위원장의 임기가 신임 위원장 임명시까지 계속된다.
- 보드나르 위원장 재임 시 옴부즈만은 인권 수호를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신임을 얻었으며, 상원을 제외하고는 집권여당인 '법과정의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유일한 공공기관이다.
- 보드나르 옴부즈만은 사법 독립성을 저해하고 성소수자 등 소수자들에게 차별적 언어를 사용하는 정부의 행태를 종종 비난했다.

- 일부 여당 의원들은 보드나르 옴부즈만이 신임 옴부즈만 임명시까지 옴부즈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의 폐지를 헌법재판소에 요청한 상태이다.
- 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판결은 10월 20일로 예정되어 있다.
- 현행법 하에서 야당이 박빙의 차이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상원이 신임 옴부즈만 임명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보드나르 옴부즈만은 헌법재판소가 현행법을 폐지하게 되면 집권여당이 상원에서 차기 옴부즈만을 임명할 수 없도록 할 방법을 찾아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 보드나르는 ‘인권 보호에는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임 옴부즈만이 헌법적 절차에 따라 선임되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 베니스 위원회는 옴부즈만이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없다면 ‘폴란드 국민과 폴란드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권리 보호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Human rights body fears ‘paralysis’ of Polish ombudsman (2020.10.13, AP)

**유럽 옴부즈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공공조달 절차 개선 권고**

(Pensions&Investments, 2020.11.25)

*유럽연합 옴부즈만은 기업이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정책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럽 집행위원회에 EU 관련법의 이해충돌 조항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환경, 사회, 거버넌스 연구 과제 수행기관으로 블랙록(BlackRock) 자산운용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공정책 관련 계약을 위한 지원자 평가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받았다.
- 유럽연합의 은행 자문 규정 프레임워크에 사회적 책임투자 요소를 통합하기 위한 도구 및 메커니즘 개발 연구 용역 제공업체로 블랙록 자산운용의 금융시장자문사업부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선정한 결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유럽 옴부즈만이 위와 같이 권고했다. 이 연구 용역 계약은 3월 경쟁입찰 절차를 통하여 체결되었다.
- 에밀리 오라일리(Emily O'Reilly) 옴부즈만은 또한 EU 예산 집행으로 재정이 지원되는 공공조달절차를 관장하는 EU의 관련법 내 이해관계충돌 조항 강화를 집행위원회에 요청했다.
- 옴부즈만은 보도자료를 통하여 '기업이 자신의 사업 이익을 규제하는 정책에 반영될 연구를 수행하겠다고 신청했을 때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이를 훨씬 더 철저히 검토했었어야만 한다'고 말했다.
- 이번 조사는 연구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요구 시 제시된 내용 하에서 집행위원회가 블랙록의 신청서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실시되었다.
- 옴부즈만 결정의 개요를 설명하는 문서에 따르면 '옴부즈만 조사 결과 블랙록의 제의로 인해 몇몇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입찰자가 특정 시장에 투자하거나 투자를 관리하는 등 시장 발전에

직·간접적 경제적 이익을 갖고 있는 경우, 이러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입찰자 스스로에게 유리한 결과를 내놓는 위험성이 있다. 이는 문제의 기업에게도 적용되는 경우이다.

- 또한 옴부즈만 결정에 따르면 집행위원회가 평가에 있어서 비용에 가산점을 두었기 때문에 블랙록이 제시한 낮은 가격은 ‘계약을 따낼 가능성에 최적화’되어 있었으며, ‘계약 수주를 통해 블랙록이 고객들 및 자사와 관련된 주요 투자 영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 영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었다.
- 오라일리 옴부즈만은 보도자료에서 ‘블랙록 측의 입찰 동기와 가격 책정 전략,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하여 취해진 회사 내부적 조치가 적절했는지에 대하여 질문이 주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 때문에 블랙록의 연구 계약 수주가 부적절한 것이었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는 옴부즈만의 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라일리 옴부즈만은 EU의 공공조달 규정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사의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안은 EU 입법당국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 오라일리 옴부즈만은 보도자료에서 ‘EU 정책과 관련된 공공계약 수주를 둘러싼 이해관계 충돌 위험성은 EU 입법당국 및 의사결정자 모두가 더 철저하게 검토해야 한다. 단순히 체크리스트를 채우는 식의 검토 결과만으로 체결할 수 없는 계약도 있다. 모든 입찰자들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안서를 평가할 때 다른 중요한 요소들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블랙록의 계약 수주 결정 이후 옴부즈만에 세 건의 민원이 접수됐는데, 두 건은 유럽의회 위원으로부터, 한 건은 시민사회그룹으로부터 제출된 것이라고 옴부즈만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블랙록은 성명서를 통하여 자사의 금융시장자문사업부는 ‘전 세계 모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과 최선의 가치를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력하고,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이미 공식적으로 블랙록 금융시장자문사업부에서 제출한 제의의 기술적 품질을 해당 과제 용역 계약 체결 결정의 근거로 적용했음을 밝히며, 금융시장자문 사업부는 학계와 시민사회, 은행과 감독기구, 시장 참여자 등 모든 관계자들을 폭넓게 포괄하는 접근방식에 기반하여 과업을 완수하고 집행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출처: European ombudsman tells EC to improve procurement process (2020.11.25, Pensions&Investments)

**캐나다 옴부즈만 팬데믹 중 공공기관의 민원처리 시스템 강화 촉구** (IOI, 2020.12.15)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옴부즈만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들이 민원을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처리지침을 제공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브리티시콜롬비아주 옴부즈만은 공공기관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민원 처리를 위한 모범 사례 보고서를 새롭게 발표했다.
- 제이 초키(Jay Chalke) 옴부즈만은 2020년 3월 이래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코로나 관련 민원 및 질의를 600건 이상 접수했다고 밝히며, ‘팬데믹으로 인하여 공공서비스의 유례없는 차질이 생기면서 새로운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상황을 직접 목격해왔다. 팬데믹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부문의 변화로 시민들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 공공기관들이 이러한 민원을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의 새로운 민원처리지침에서 핵심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원을 가치있게 여기고 그로부터 배움을 얻는 직장 문화 조성, 민원 처리와 분쟁 해결 능력을 갖춘 직원 채용 및 교육, 공정하고 철저한 민원 조사 방법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 오늘 발표된 보고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실에서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체크리스트나 민원처리 정책모델 등의 추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공기관들이 팬데믹 중의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옴부즈만은 공공 당국들이 다음과 같은 내부 민원처리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 ▲ 민원처리 절차에 대한 분명하고 알기 쉬운 정보를 온라인에 제공
  - ▲ 민원 검토 결과가 확정되기 전 민원인이 의견제시할 수 있는 기회보장

- ▲ 민원 검토 또는 조사 이후 민원인에 연락할 때 결정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제시
  - ▲ 민원처리 결과의 문서화와 추적, 보고를 위한 적절한 시스템 수립
  - ▲ 민원을 발생시키는 시스템 상 문제점 확인과 해결의 방법으로서 민원의 추세를 정기적으로 관리·검토
- 초키 옴부즈만은 ‘이러한 요소들을 갖추는 것은 언제나 중요하지만 팬데믹 중에 민원 처리를 위해서는 더욱 중요하다. 사람들이 더 많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중의 우려가 신중하게 고려되고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옴부즈만은 지난 40년 이상 시민들의 민원을 조사하고 처리해왔다. 옴부즈만실은 정부와는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공정한 서비스를 무료로 시민에게 제공하며 비밀을 보장한다. 옴부즈만은 브리티시 컬롬비아주 내 천 여개 이상의 공공기관을 감독하며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민원을 접수한다. 새로운 민원 해결지침 전문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다.

※ 출처: IOI “CANADA: Ombudsperson calling on public sector organizations to strengthen complaint handling systems during pandemic” (IOI 홈페이지>News, 2020.12.15.)

**국제: 국제연합(UN)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구의 중요성 인정** (IOI, 2020.12.18)  
 옴부즈만 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옴부즈만 역할을 강조한 UN 옴부즈만 기구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 아일랜드 옴부즈만이자 세계옴부즈만협회장인 피터 틴달(Peter Tyndall)은 2020년 12월 16일 UN총회에서 채택된 UN 옴부즈만 기구 결의안을 진심으로 환영했다.
- 이번 UN 결의안은 독립성과 객관성, 투명성, 공정성, 형평성 등 옴부즈만 기구의 핵심 원칙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는 효과적인 행정과 인권, 건전한 거버넌스와 법치주의 증진에 있어 옴부즈만 기구의 역할을 위한 전 세계적 지지를 확보하는 데 중요한 진일보가 될 것이다.
- 결의안은 2020년 12월 16일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 이번 결의안은 모로코가 제의하고 아일랜드가 외교통상부를 통하여 공동 후원했다. 결의안이 통과되어 UN과 긴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세계옴부즈만협회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아일랜드 옴부즈만 피터 틴달은 독립적인 옴부즈만 기구들의 협력을 위한 유일한 국제 기관인 세계옴부즈만협회장이기도 하다. 세계옴부즈만협회에는 전 세계 100여개국 200개 이상의 기관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무국은 비엔나에 위치한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위원회에서 제공하고 있다.
- 피터 틴달 협회장은 ‘이번 결의안은 옴부즈만 기구의 보호와 옹호에 관한 원칙, 즉 베니스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원칙을 옴부즈만을 위한 새로운 국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베니스 원칙에는 옴부즈만 기구를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한 25개의 세부 원칙이 담겨 있다.

- 세계옴부즈만협회 사무총장이자 오스트리아 옴부즈만인 베르너 아몬 (Werner Amon)은 ‘이번 결의안은 전 세계 옴부즈만 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이들이 수행하는 필수적인 역할에 대한 인식을 국제적인 수준에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진일보이다. 결의안은 옴부즈만 기구들과 UN 사이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며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 새로운 트렌드와 모범 관행 등에 대하여 세계옴부즈만협회에서 수집한 정보는 UN이 사안을 모니터하고 정책을 개발, 계획을 구상하는 데 상당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그 대가로 UN은 옴부즈만에 대한 인식 수준을 높이고 위기에 처한 옴부즈만 기구의 보호를 위하여 그 영향력을 활용함으로써 세계옴부즈만협회와 전 세계 정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번 결의안은 세계옴부즈만협회와 UN이 향후 UN 인권 아젠다 추진을 위한 중요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출처: “WORLD : United Nations recognises importance of independent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020.12.18.)